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03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박정현 · 서미화 · 박홍배
황정아 · 양부남 · 김한규
김현정 · 이재정 · 이학영
김재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수행한 역할과 맞지 않음.

또한,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산불을 지켜본 많은 국민도 신속한 산불 진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함.

이에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층 더 강화된 인명보호 및 민가 등 시설물 방어와 산불진압 업무에 총력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 이외에 단순한 피해복구 지원 및 근접 대기만을 열거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예방·진압”을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복구”를 “피해복구 및 응급의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 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 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 ----- ----- ----- ----- ----- ----- -----.
1. 산불에 대한 <u>예방·진압</u> 등 지원활동	1. ----- <u>예방</u>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u>피 해복구</u> 지원활동	4. ----- <u>피 해복구 및 응급의료</u> -----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